

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2026. 5.

농 립 축 산 식 품 부
(농업재해지원팀)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 개정에 따라 농업재해 정의가 변경되어,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고지원 대상 농업재해에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.

또한, 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에서 재해발생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을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 중 “호우(豪雨), 해일, 태풍, 강풍, 이상저온(異常低溫)”을 “호우(豪雨), 지진, 해일, 태풍, 강풍, 이상고온(異常高溫), 이상저온(異常低溫)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법 제4조제7항에서”를 “법 제4조제10항에서”로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재해발생 실태조사)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어업 관련 세부 피해규모
2. 농림축산식품부,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복구 지원 현황
3. 농림축산식품부,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복구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농어업인의 인식 및 만족도
4. 농어업인의 재해대응 요령에 대한 인식 수준
5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, 설문·면접조사, 전화조사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조사 및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자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전문적인 연구 기관·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업재해) ① (생략)	제2조(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업재해) ① (현행과 같음)
1. 가뭄, 홍수, <u>호우(豪雨)</u> , 해일, 태풍, 강풍, <u>이상저온(異常低溫)</u> , 조수(潮水), 한파(寒波), 폭염(暴炎), 황사(黃砂), 「농어업 재해대책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 제1항에 따른 병해충(病害蟲), 일조량(日照量) 부족 또는 그 밖에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(이하 “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”라 한다)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그 피해면적이 50헥타르 이상인 경우	1. ----- <u>호우(豪雨)</u> , 지진, <u>해일</u> , 태풍, ----, <u>이상고온(異常高溫)</u> , <u>이상저온(異常低溫)</u> , <u>조수(潮水)</u> ,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2. ~ 4. (생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기준)	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기준)
① <u>법 제4조제7항</u> 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	① <u>법 제4조제10항</u> ----- ----- -----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< 신 설 >

제8조(재해발생 실태조사) 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어업 관련 세부 피해규모
2. 농림축산식품부,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복구 지원 현황
3. 농림축산식품부,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복구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농어업인의 인식 및 만족도
4. 농어업인의 재해대응 요령에 대한 인식 수준
5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, 설문·면접조사, 전화조사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조사 및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자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전문적인 연구기관·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